

## ‘상상’에서 ‘사실’로

김형중 지음,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를 읽고

김택경 홍익대학교

### I. 머리말

조선(朝鮮)과 청(淸)의 국경문제는 국민국가의 구성 요소인 영토·국민·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저서와 논문에서 이를 다루어 왔다.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민족주의적 감정에 쉽게 경도되는 문제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두만강 북쪽 대안의 소위 ‘(북)간도’ 지역의 경우 1880년대 조선-청 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주의에 입각한 해석이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족주의의 영향 속에서 ‘간도’ 지역은 역사적 ‘사실’의 대상으로서보다는 ‘상상’되거나 ‘희망’의 대상으로 전제되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러하기에 오해와 오독, 그리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결은 다르지만 ‘고토’를 회복해야 한다고 전제하는 한국이나 ‘신성한 영토’를 지켜야 한다고 전제하는 중국, 두 국가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김형중 교수는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이하 『연구』로 약칭)에서 조선-청 국경문제 연구가 위에서 말한 민족주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역사가 ‘정확한’ 사료적 토대 위에서 재구축될 수 있도록 다시금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수행했다. 즉, 저자는 『연구』에서 1885년(을유감계), 1887년(정해감계)에 이루어진 제1·2차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에 대한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을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관련 역사상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저자는 다년간 『국역 『청계중일한관계사료』』 1·2·3(동북아역사재단, 2012, 2013, 2016)과 『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 관련 자료 선역』(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의 번역에 매진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국경문제와 관련된 방대한 사료를 수집, 분석했다. 또 「최근 중국에서의 청대사 연구동향의 분석: 특히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를 중심으로」(『중국 역사학계의 청사 연구 동향: 한국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2009)과 「오대징과 1880년대 청·러 동부국경감계」(『중국근현대사연구』 60, 2013), 「19세기 근대 한중관계의 변용」(『동양사학연구』 140, 2017) 등의 연구를 통해 해당 시기 조선과 청, 그리고 러시아 사이의 국경문제를 전반적으로 파악했다. 이상 일단 외형만을 놓고 보아도 『연구』는 이 분야의 관련 사료와 연구를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있어 후속 세대의 연구에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구』는 이미 여러 편의 글에서 소개와 평가가 이루어진 만큼 여기에서 굳이 이 책을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서가 출판된 2018년 이미 두 편의 훌륭한 서평이 나왔다(박장배,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읽기-김형중(201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동북아역사논총』 59, 2018; 배성준, 「1880년대 국경회담에서 발견한 간도문제의 ‘불편한’ 진실」(서평) 김형중(2018),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88쪽, 『인문논총』 제75권 제3호, 2018). 두 편의 서평은 『연구』를 상세하게 소개 및 평가하고 전망을 덧붙여 놓았다. 그리고 『연구』의 ‘들어가는 말’과 ‘나오는 말’에는 책 전체의 문제의식과 핵심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또 『연구』의 사료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 관련 자료 선역』에 수록된 ‘머리말’도 이 책의 훌륭한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연구』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책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사항을 선별하고 그것을 요약 및 논평하는 방식으로 서평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 II. 1880년대 국경분쟁의 씨앗, 목극등(穆克登)의 정계비

표제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연구』의 중심 내용은 1885년과 1887년 조선·청간에 이루어진 국경회담의 배경과 을유감계, 정해감계,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저자가 지적했듯이 1880년대 조·청의 국경분쟁은 사실상 1712년(숙종 38, 강희 51) 오라총관(烏喇總管) 목극등이 세운 백두산 정계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저자는 제1장 ‘들어가는 말’의 두 번째 소절에서 상당한 편폭을 할애하여 백두산정계비의 설립 이후 논란과 오해가 촉발되게 된 원인을 추적하고, 이화자(李花子)와 이강원(李康源) 등의 최근 선행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백두산정계비가 후대에 남긴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백두산정계비는 이 책뿐만 아니라 1900년대 초 발생한 소위 ‘간도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핵심이 되는 키워드이다. 아래에서는 일단 저자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목극등이 남긴 수수께끼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해 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목극등은 1712년 강희제의 명을 받아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상류 사이의 백두산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조선 측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백두산 정상에 오르는 데에 성공했고, 이후 동남쪽으로 10여 리 떨어진 압록강과 토문강의 발원지점에 도착하여 “서쪽은 압록(강)이 되고, 동쪽은 토문이 된다.”는 내용의 정계비를 세웠다. 이로써 그는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 지역을 분명히 조사하라는 강희제의 명을 완수했다고 여겼다. 그리고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이후 1880년대 국경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청 양국 사이에는 비록 범월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국경문제로 비화되는 일은 없었다. 두 국가 사이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천연의 경계라는 것에 대해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목극등이 두만강의 수원이라고 생각했던 동쪽의 ‘토문’은 두만강으로 연결되지 않고 송화강의 원류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목극등은 송화강으로 합류하는 물줄기를 두만강의 원류로 착각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자신의 실수와 착오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무리했고, 정계비에 토문이라고 기록한 두만강이 조·청 양국의 천연 경계를 이룬다고 생

각했다.

안타까운 점은 이후 조선 정부가 이 문제를 알고도 유야무야로 처리했다는 것이었다. 다음 해 조선의 당사자들은 돌더미·흙무더기·나무울타리를 세워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목극등이 지정한 물줄기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다.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청에 알려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덮어 버리기로 결론을 지었다. 조선의 당사자들은 목극등이 지정한 물줄기의 남쪽에서 두만강 상류와 연결되는 물줄기를 찾아냈고, 나무울타리와 흙무더기로 표시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울타리와 흙무더기는 사라져버리거나 흔적만 남게 되었고,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사실조차도 잊히고 말았다.

이렇듯 백두산 정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후 조·청 두 국가에서는 부분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추측과 해석이 난무하게 되었다. 예컨대 조선에서는 토문강, 도문강, 두만강이 동일한 강인가 아닌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다. 또 이 지역 관련 지도는 부정확한 가정과 상상, ‘희망’에 근거하여 그려져 나중에는 도리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데에 장애가 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은 청도 마찬가지였다. 청에는 목극등의 정계와 관련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정계비가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 상류에 세워지게 된 경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880년대 국경분쟁에 이르러 청 측은 목극등의 조사를 정계가 아니라 사계(査界)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변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백두산정계비의 위치와 내용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그의 실수를 몰랐던 청으로서는 무리한 방식으로 조선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저자는 1880년대 국경분쟁의 기원이자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백두산정계비의 ‘수수께끼’를 풀어냈다. 후대의 백두산정계비를 둘러싼 논란은 정계비의 위치가 두만강이 아닌 토문강에 대응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이는 목극등의 실수였다. 그런데 조선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청에 알리지 않고 유야무야 처리해 버렸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계비 설치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차츰 잊혀졌고, 부정확한 정보와 추측에 기초한 지식들이 오히려 널리 전파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가운데 1880년대 조·

청 두 국가는 국경분쟁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 III. '경진개척(庚辰開拓)'의 함의

저자가 1880년대 국경분쟁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주목한 '경진개척'은 『연구』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건이다. 지금까지 '경진개척'에 대해서는 조선인의 이주사 연구에서 간략히 언급되었을 뿐 깊이 있는 분석이 시도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경진개척'에 대한 사료는 윤병석에 의해 소개된 윤정희의 회고록인 『간도개척사』가 유일하다. 저자는 『간도개척사』의 '경진개척' 관련 내용을 당시 조·청의 관련 사료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밝혀냈다. 이를 통해 '경진개척'이 1880년대 국경분쟁의 시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이주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잘 알려진바, 압록강·두만강 경계지역에서는 조·청 양국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조선인의 범월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특히 1860년대 이후 범월은 형태와 규모에서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 범월은 채삼·수렵·벌목 혹은 개간·교역·도피 등을 위해 분산적·소규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860년대 이후부터는 점차 개간·이주·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대규모적인 형태로 전환되었다.

186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조선인의 월간은 1880년대에 들어서 급속히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저자는 혼춘(琿春) 삼품함(三品銜) 후선지부(候選知府) 이금용(李金鏞)의 보고를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이 시기 조선인의 월간이 단기간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무언가 '특수한' 계기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금용은 1881년 9월 두만강 북안 약 2백 리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조선인이 월경하여 2천 상(晌)의 황무지를 개간, 경작하고 있고, 조선 지방관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저자는 이와 같이 조선인이 단기간 대규모로 개간을 행하고 조선의 지방당국이 증명서까지 발급했다는 사실은 함경도 당국이 여기에 깊숙이 간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본다. 즉, 지방당국의 목인 없이는 이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월간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저자는 이러한 대규모 월간의 내막을 알려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경진개척’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경진개척은 1880년 회령부사(會寧府使)로 부임한 홍남주(洪南周)의 목인 아래 추진되었던 두만강 북안의 대규모 월간을 의미한다. 대규모 월간이 지방관의 목인·권유·비호 아래 추진되었고 지방당국이 호적을 편성하고 세금·잡역·소작료를 징수하는 등 사실상 ‘식민지 경영’을 하는 것과 진배없는 상황이었다고 한 점은 월간을 단순히 생존을 위해 감행된 것이라고 해석해 온 기존의 학설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바로 지방당국의 이해관계가 월간 지역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1880년대 조·청의 국경분쟁이 이전의 관행과 달리 지방당국이 먼저 국경문제를 제기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주목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저자가 『연구』에서 발굴, 분석해낸 ‘경진개척’은 조선인의 이주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1880년대 조·청의 국경분쟁의 직접적인 배경과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관건이 되는 사건이다. ‘경진개척’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지방당국의 월간지역에 대한 통제 이후 1894년 청일전쟁(淸日戰爭)과 1900년 의화단운동(義和團運動) 등 달라진 국제정세 아래에서도 계속되었다. 앞으로 『연구』를 토대로 삼아 조선과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지방당국과 중앙정부가 월간민과 월간지역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를 좀 더 상세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 IV. 이중하(李重夏)의 국경인식

1880년대 국경분쟁의 과정에서 조선 정부가 두만강을 양국의 경계로 확정지은 사실은 특별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조선 정부는 국경문제를 제기한 초기단계에서는 토문강(=송화강) 동쪽과 남쪽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했으나, 제1차 국경회담을 거치면서 두만강을 경계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저자의 지적처럼 이 사실은 당시나 지금이나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하여 ‘토문강

=송화강'설은 제1차 국경회담 이후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90년대에 부활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이후 월간 이주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조선(대한제국)과 일본이 월간민과 이주지역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관찰시키는 과정에서 초래된 결과로 보이는데 앞으로 관련 연구가 좀 더 진척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제3, 4장에서 보이듯이 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 이중하는 1885년 제1차 국경회담 이후 조선 측이 두만강을 경계로 입장을 정리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제1차 국경회담에 임해서 그는 백두산정계비에 근거한 '토문-두만양강론'을 내세워 청 측과 국경회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토문-두만양강론'의 중요한 논거 가운데 하나로 함경도 당국이 주장했던 '토문강=분계강=해란강론'이 회담의 시작부터 무너지면서 그는 이후 수세에 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과 함경도 당국이 이 지역의 지리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무리하게 국경문제를 제기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공동감계의 결과 백두산정계비 옆에서 시작되는 물줄기는 송화강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당시 조선 측과 청 측 모두에게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와도 같은 문제였다. 정계비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면 토문강이 송화강이 된다. 이렇게 되면 송화강 동쪽과 남쪽이 모두 조선의 땅이 되어버린다. 이에 청 측은 정계비가 조선 측에 의해 원래의 자리로부터 이설되었다는 '이설론'을 견지하는 한편 정계비를 최대한 신뢰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담을 몰고 갔다.

입장이 곤란했던 것은 조선 측도 마찬가지였다. 정계비의 비문에 따르면(토문=송화강으로 해석한다면) '천조상국'의 발상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대한 지역을 조선의 땅으로 주장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또 조선 측은 '토문강=분계강=해란강론'이 이미 붕괴한 만큼 분계강 남쪽 월간민의 거주지가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이 시기가 1882년 임오군란 이후로 청의 조선에 대한 통제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중하는 황제가 시혜를 베풀어 월간민을 선처하게 해 달라고 청 측에 요청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어찌 보면 조선 측이 국경문제를 제기한 최초

의 동기는 토문강-분계강 동남쪽이 조선 땅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월간민과 월간 지역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데에 있었으므로 그의 요청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중하는 제1차 국경회담을 마치고 고종에게 올린 보고서(『을유장계(乙酉狀啓)』)에서 토문강 상류가 송화강으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조선 측이 더 이상 ‘토문강 경계론’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즉, ‘토문강=분계강론’ 혹은 ‘토문강=송화강론’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후 그는 추가로 올린 보고서(『추후별단(追後別單)』)에서 먼저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이기 때문에 두만강이 조·청 양국의 경계가 된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정계비 동쪽의 물길이 두만강의 원류로 왜 연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했다. 나아가 그는 정계비에서 시작된 골짜기 옆의 돌·흙무더기가 끝나고 물길이 땅속으로 숨는 평평한 언덕(삼포, 황화송전자)에서부터 두만강 발원지(=홍토산수)까지 나무울타리·흙무더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냈다고 보고했다.

저자에 의하면 이중하가 지목한 이 나무울타리·흙무더기는 두만강 발원지의 표지로 백두산정계비의 수수께끼를 푸는 핵심적인 실마리이다. 최근 이화자와 이강원의 연구와 답사를 통해 이 수수께끼는 거의 풀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화자는 삼포에서 두만강 상류에 이르는 지역에서 나무울타리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것과 같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흙무더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이강원은 이러한 이화자의 발견을 심화시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저자는 이로써 이중하가 이후 제2차 공동감계에서 내세우는 ‘정계비-홍토산수경계론’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1887년 제2차 국경회담의 임무를 다시 부여받은 이중하는 청 측의 파상공세에 맞서 끝까지 ‘홍토산수경계론’을 견지했다. 조·청 양측은 각각 ‘홍토산수론’과 ‘홍단수론(나중에는 석을수)’을 고수했고, 그 결과 제2차 국경회담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제2차 국경회담은 황제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 V. ‘차지안치론(借地安置論)’의 시대성

『연구』는 그야말로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성취를 일궈내고 있지만, 평자가 여기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이라는 특정 주제를 실증적으로 다루면서도 그 속에 담긴 시대적 함의와 변화를 읽어내고 있는 점이다. 역사학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실증적인 재현에 치중한 나머지 이른바 자료에 매몰되어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한다. 이와 달리 『연구』에는 곳곳에서 한·중관계와 중국사의 시대적인 특성과 변화를 짚어내고 있어 해당 시대에 대한 저자의 감각과 판단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이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차지안치’의 제기과 폐기는 저자가 제6장 ‘나오는 말’에서 지적했듯이 1880년대 조·청관계의 시대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차지안치론을 중심으로 1880년대 조·청관계의 시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1880년대 조선과 청의 관계는 전통적인 ‘사대(事大)’-‘자소(字小)’의 중화질서에서 만국공법에 의한 국제법 질서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청은 앞서 언급했듯이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2차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은 대등한 외교 교섭이 아니라 더욱더 ‘속방’의 ‘천조상국’에 대한 전통적인 ‘자소’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저자의 지적대로 그렇다고 청이 조선 측에서 제기한 국경과 월간민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거나 강압할 수는 없었다. ‘사대’-‘자소’의 상호관계에 내재된 고유한 특성, 즉 쌍방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도덕규범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국경분쟁의 초기 조선과 청은 ‘자소지’에 의한 ‘관용’과 ‘시혜’의 전통에 의존하여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기도 했다.

‘차지안치’는 중국 땅을 빌려 월간 조선인을 안치하겠다고 황제에게 은혜를 간청하는 방안이었다. 쉽게 풀이해서 황제가 월간한 조선인들을 측은하게 여겨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는 발상으로 전통적인 ‘사대’-‘자소’의 논리에 충실한 방안인 것이다. 이는 제1차 국경회담이 끝날 무렵 원세개(袁世凱)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월간 조선인에 대한 길림당국의 초기 반응도 동일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길림당국은 ‘천조상국’의 ‘속방’에 대한 ‘일시동인’이라는 전통적인 관용과 시혜를 베풀어 월간 조선인을 편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조선이 기대한 ‘차지안치’의 방안은 청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월간 조선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지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청의 관용과 시혜를 요청하는 동시에 월간 조선인에 대한 배타적인 관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청은 점차 조선 정부의 목적이 월간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월간민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수탈’에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를 확신하게 되면서 조선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저자의 지적처럼 이러한 조선의 방안은 전통적이건 근대적이건 간에 상대국가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더구나 그것은 ‘사대’-‘자소’의 전통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었고,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조선 측이 제안한 ‘차지안치’ 방안은 청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후 길림당국은 조선 지방당국의 개입을 배제한 채 월간 조선인을 적극적으로 동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1880년대 국경회담의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조·청 양국이 처음에는 전통적인 ‘사대’-‘자소’ 관계에 의존하여 국경과 월간 조선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회담이 끝날 무렵에는 양측 모두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저자는 여기에서 전통적인 ‘사대’-‘자소’가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틀로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조선과 청의 관계는 새로운 질서로 전환되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전환은 불가피했던 것이었다.

## VI. 맺음말

이상과 같이 『연구』는 1880년대 조선인의 대규모월간을 계기로 함경도 당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초래된 조·청 간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실상을 방대한 사료에 근거하여 보여주었다. 제1·2차 국경회담의 쟁점은 두

국가의 경계는 어느 강인가, 두만강 북쪽 지역은 어느 국가에 속하는가였다. 이렇듯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실증해야 할 ‘사실’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고 말해도 전혀 과장은 아닐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분야는 글자 그대로 사실에 대한 오해와 오독, 그리고 논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복잡다단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확정하는 그야말로 ‘지난한’ 험로를 거쳤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이미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의 주제는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조선인의 이주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른바 ‘간도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경진개혁’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조선인의 이주와 월간을 생존을 위해 감행된 것으로 보는 시각은 이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양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처지와 정책,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정세 등이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저자는 향후 조선인의 월간과 이주역사가 더욱 폭넓은 시각에서 다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조선인의 이주역사가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된다면 ‘간도문제’에 대한 해석도 좀 더 정밀해질 것이다.

‘간도문제’는 뜨거운 감자이다. 우리에게 간도는 돌려받아야 할 땅으로 전제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 관련 자료 선역』의 ‘머리말’에서 민족주의적 편향이 초래하고 있는 그릇된 역사인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라는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송화강 동쪽에 위치한 곳인 오라의 총관 목극등은 자기가 거주하던 지역을 포함한 거대한 지역을 조선에 넘겨준 셈이고, … 조선정부는 이 거대한 땅을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수백 년 동안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 강희제와 목극등, 그리고 조선의 숙종 이후 모든 군주와 신하들은 … 역사의 거대한 죄인이 되어 버리는 셈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제1차 국경회담 이후 조선정부가 ‘토문강경계론’을 포기하고 ‘두만강경계론’으로 입장을 정리한 사실을 상세히 밝혀내고, 조선정부가 이후 교섭에서 이를 끝까지 견지했음을 누차 강조했다. 이 점은 지금까지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하지만 이후 본격화되는 간도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그 함의는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연구』의 ‘머리말’에서 1880년대 전후 조선인의 해외 이주사는 ‘이주민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의 특이한 사례로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

한데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겸손하게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후속 연구에서는 저자가 이 책에서 쓴 ‘개척지 경영’, ‘식민지 경영’ 등의 용어가 좀 더 보편적이고 이론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이를 통해 앞으로 조선인의 이주역사가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규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투고일: 2019년 8월 1일 |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2일